

심사결과보고

의안 번호	의안명	심사결과	비고
4573	대전광역시 서구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	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
경제복지위원회

의안 번호	4573
----------	------

대전광역시 서구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경 제 복 지 위 원 회

대전광역시 서구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7. 27.

경제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년 7월 9일, 대전광역시 서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7월 9일, 의장으로부터 회부

다. 상정 및 심사 일자: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

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.의결 (2026.7.21.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「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-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임을 명시하고, 법령을 단순 재기재하여 자치법규 제정 실익이 없는 통합지원협의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제1조(목적):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임을 명시
- 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: 법 규정을 단순 재 기재하여 자치법규 제정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: 류옥화)

-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「돌봄통합지원법(약칭)」에 따라, 해당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안 제1조(목적) 관련 상위법인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,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담음으로써 자치법규로서의 규범력과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려는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관련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의 법적 근거를 「돌봄통합지원법」과 연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협의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원활한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,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「돌봄통합지원법」과의 조문 체계 및 용어 사용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며,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: 생략

5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6. 소수의견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대전광역시 서구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573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7. 9.

제 출 자: 서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임을 명시(안 제1조, 안 제11조제1항제3항)
- 나. 법 규정을 단순 재기재하여 자치법규 제정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
(안 제11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마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강화 등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입법예고 : 2026. 5. 22. ~ 6. 11. / 접수 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서구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서구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협의체의”를 “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”로 한다.

-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 협의체는 「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.	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.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	<삭 제>

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
관한 사항

2.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
사항

3.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
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사항

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
한 사항은 「대전광역시 서구
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
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협의
체의 -----

-----.

대전광역시 서구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 개정안은 기정예산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으로, 새로운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음.
- 또한 의안의 내용은 선언적·권고적 성격을 가지므로, 「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순영 과장

관계법령

☐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6. 3. 27.] [법률 제20445호, 2024. 9. 2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0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3.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5. 10. 23.] [법률 제20929호, 2025. 4. 22., 타법개정]

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·군·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